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 12. 8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휴관일에 대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서관의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함 (안 제8조)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7조 (생략)</p> <p>제8조 (휴관일) ①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p> <p>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p> <p>2. 매월 17일</p> <p>② 기타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월요일로 한다.</p> <p>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 ~ 제17조 (생략)</p>	<p>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9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p> <p>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중 [별표 1]의 위치란 중 "충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p>	<p>제1조 ~ 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 (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p> <p>제9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개정안과 같음)</p>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하되, 이용자의 편리를 최대한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 1] 명칭 및 위치의 중원학생야영장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학생야영장난중 "제천군"을 "제천시"로 한다.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충북 청주시 사직2동 38 - 6
충주학생도서관	충북 충주시 성내동 182
중원도서관	충북 충주시 주덕면 신중리 130 - 3
제천도서관	충북 제천시 화산동 103
청원도서관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281 - 3
보은도서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90 - 1
옥천도서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63
영동도서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7 - 25
진천도서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0 - 2
괴산도서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9 - 12
증평도서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044 - 2
음성도서관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
금왕도서관	충북 금왕읍 무극리 53
단양도서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1033 - 1